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목 차>

1.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2.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 성 자	이름	정구봉
	담당부서 (과)	산재보상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代	김규석		연락처	044-202-8838
	과장	오태웅		이메일	050006033@mail.go.kr

2021. 09. 01.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2.규제조문	제61조의2 제1항, 제2항		
	3.위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9.10 ~ 2021.10.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가 있으며,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복 후 원 사업장에 원활히 복귀하도록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의 권리보장이 필요 ○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소속 근로자가 원활히 사고전 원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이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은 산재보험법 제1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의 목적과도 일치 ○ 산재법의 직장복귀 지원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해 계획서 제출요구의 후 제출 기한을 두어 관련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제출서류에는 사업주의 소속 산재노동자 복귀 여부를 확인, 복귀에 필요한 지원필요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사업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동시에 사업주가 행하는 직장복귀 노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행정대상 규모는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거나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산재 근로자로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원직복귀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등 제외) 산재근로자 연 20,492명의 사업주가 대상임 		
	7.규제내용	○ 산업재해보험법 제75조의 2(직장복귀 지원)로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 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p>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수행 예정 직무 3. 그 밖에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p>산재근로자를 산재발생 당시 직장으로 복귀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45%;">유 형</th> <th style="width: 40%;">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규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는 사업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해근로자 20,492명의 사업주</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는 사업주	재해근로자 20,492명의 사업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받는 사업주	재해근로자 20,492명의 사업주								
	9. 규제 목표	<p>○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의 보호 및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 직장 복귀를 준비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가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직장복귀를 도모</p>								
	10. 영향 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의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p>○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환자는 생계곤란* 및 삶의 질 저하, 사회적 어려움 호소, 조속한 직장복귀 과정에 사업주 참여 필요</p> <p>* 개인총소득('17년 취업실태조사/평균): 원직장복귀자 3,375만원, 재취업자 2,577만원, 자영업자 3,356만원, 실업 1,030만원, 비경제활동 1,028만원</p> <p>○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취약 근로자의 요양 등을 이유로 해고 제한 명시, 이미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의 당위성은 노동법적 기본권에 해당(근로기준법 제23조)</p> <p>○ 결론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는 당위성이 인정된 기본권이며, 동 대안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 구축에 해당</p>								
기타	12. 일몰 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등)</p> <p>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직장복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가능성 여부 및 수행 예정 직무 3. 그 밖에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해당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때 직장복귀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장복귀자문회의를 둔다. 이 때 직장복귀자문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직장복귀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정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개입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권리 보장 필요

* (원직복귀율) ('17) 41.6% → ('18) 42.5% → ('19) 43.4% → ('20) 44.4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	대안명	사업주 소속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내용	○ 산재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근로자가 요양 후 본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요양 기간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귀 계획을 제출 요구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계획서 제출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규정이나 제출기한의 명시로 제출 기피 사업주에게 제출요구 용이 ○ 사업주 복귀이행 의지를 기한내 파악하여 이후 조속한 행정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장복귀에 대한 서류 작성 부담 * 직장복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벌칙 등 불이익 조항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으로 원직복귀 의무는 기존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업주 (제조업 및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노동자의 복귀 의지가 강하고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대다수(86%)의 사업주는 원직복귀 시킬 의사가 있음. - 현행 제도에 사업주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 	○ 원직복귀 지원 제도 도입을 통해 재해 근로자 정보제공

	자의 치료기간, 치료과정, 장애정도, 회복예상기간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였다고 함. - 사업주와 산재노동자 사이의 다툼 방지를 위한 제도,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원직복귀 지원제도 도입 필요	
의료기관 (산재병원)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필요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복귀 계획수립,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작업능력 평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직장복귀 소견서 제공 필요 - 장애예상자가 요양 초기부터 재활 특별진찰을 통하여 전문재활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편 필요 - 병원-공단 간 연계 및 협조관계 구축	○ 원직복귀 지원제도 도입 및 병원 연계

3. 규제목표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임의규정으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에 대한 법적 강제 수단 부재, 실효적 행정을 위해 제출 요구에 따른 최소한의 제출기한 필요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계획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사업주지원을 연계·제공,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유도**
 - 산재발생 사업장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의지 확인
 - 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필요한 사업주의 애로사항 조기 파악
 - 정부의 사업주지원제도 연계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복귀 이행을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원직장 복귀로 조력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행 준비 필요

- 직장복귀 이행준비를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직장복귀 계획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목적)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에 해당함
-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의 요구는 타당하며, 관련 행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한(30일) 적용은 수단 이행을 위한 행정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필요
-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직의지 확인여부를 적는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기한 30일을 부여,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재활법)에 사업장 복귀관리 규정: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재해 등으로 6주 이상 결근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복귀 관리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프랑스) 원직복귀 의무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1981년 개정노동법에 의해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노동자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관한 산재담당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함**
- **(호주) 직업복귀법을 제정하여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도와 과정을 명시 :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범칙금을 부과**
- **(캐나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온타리오주의 경우 사업장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를 제도화 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산재노동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임**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소속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동 제도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 소속 근로자의 원직복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당연의무에 해당
- 위 사항을 고려, 피규제자인 사업주의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설 대안은 사업주의 계획서를 통해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파악,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지원제도 연계를 통한 지원 제공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직의지를 계획서에 작성·제출하는 형태로 행정상 집행 어려움이 없음
- 또한 신설된 법령은 임의조항으로 재해 사업장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 미제출시 이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등 불이익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은 추가 재정소요없이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연구(2018.11)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관련 의원입법 및 본회의 의결 (2021.4)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진행중(현재)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일 이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 계획 마련

- (시행일 이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사업주 대상 제도 안내 홍보 진행

3. 종합결론

- 결론적으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 아님
- 산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안전망 제공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이행을 준비시키는 조치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2.규제조문	제61조의3 제1항, 제2항		
	3.위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9.10 ~ 2021.10.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가 있으며,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복 후 원 사업장에 원활히 복귀하도록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의 권리보장이 필요 ○ 산재법의 직장복귀 지원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통해 정부는 해당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 직장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는 재해자 2만여명의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잔존 장애가 최소화 되고 및 회복 후 직장복귀여부의 확인은 소속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행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산재보험을 통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함, 이에 산재보험법 내에서 산재근로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전문 재활지원이 가능한 전문 재활의료기관(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관리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5,673개소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50개의 전문 재활인증병원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 ※ 전문 재활인증병원의 지정과 기능에 대한 비용은 산재보험법으로 보장, 지속적인 전문 재활 의료기관의 유지와 운영이 필요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은 산재노동자의 신체재활을 통한 직업재활 촉진을 위한 목적과도 일치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재활인증병원 목록 첨부)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의, 장비를 갖추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전문 재활치료, 훈련 및 평가 기능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 산재근로자의 초기요양부터 재활까지의 의료적 연계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유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재활치료가 적기에 산재근로자에게 제공으로 조속한 직장 		

		복귀가 가능하며, 사업주 또한 소속 근로자의 직장복귀 준비 이행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7.규제내용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1.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것 2.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재직할 것 3.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 colspan="2">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관련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평가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td> <td colspan="2">산재보험 의료기관 수: 5,673개소 ※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 150개소</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관련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평가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 5,673개소 ※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 150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관련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평가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 5,673개소 ※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 150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의 보호 및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 직장 복귀를 준비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가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직장복귀를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548.21	6,526.85	-1,978.64								
		피규제자 이외		1,605,789.41	-1,605,789.41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4,548.21	6,526.85	-250.0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것 2.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재직할 것 3.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요건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이 법에 따른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정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개입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권리 보장 필요

* (원직복귀율) ('17) 41.6% → ('18) 42.5% → ('19) 43.4% → ('20) 44.4 %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전문적 재활치료를 적기 제공, 직업능력의 조속한 회복으로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기존 규제 없음
	내용	○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내용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전문재활 및 직업재활이 가능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
규제대안2	대안명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운영(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내용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 없이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추가 비용 없음	○ 원직장복귀를 위한 의료기관의 지원 등 미비로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율 정체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맞춤형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대상, 직업복귀에 필요한 재활치료 제공 ○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은 별도 의료수가를 적용받아 안정적 지원하에서 질높은 전문재활치료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관 소속병원만 관련 직업재활 진행, 전문재활이 필요한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진료선택권 제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의료기관 (산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필요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복귀 계획수립,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작업능력 평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직장복귀 소견서 제공 필요 - 장애예상자가 요양 초기부터 재활 특별진찰을 통하여 전문재활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편 필요 - 병원-공단 간 연계 및 협조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운영 ○ 직장복귀 우대수가로 인한 수익성 증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전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양성·관리, 산재환자에게 우수한 재활치료의 적기 제공으로 조속한 직장복귀 가능 기대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전문재활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아닌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기관이므로 재활을 중심으로 한 직장복귀에 알맞은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현재,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은 5천여개 산재보험 의료기관중

150개의 재활인증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동 대안은 재활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전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3. 규제목표

-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직업 능력 회복을 지원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치료 및 평가기능을 수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신체적 회복을 확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은 전문재활 의료기관 관리를 체계화 하여 보험기관이 우수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산재 환자에게 연속적·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함
- 재해근로자의 신체적 회복 및 직업능력의 조속한 회복으로 성공적인 원직장 복귀 가능하게 하므로 목적과 수단은 비례적으로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노동자가 치료 후 직장복귀에 성공하기 위하여 직장복귀 후 업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치료와 일양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치료·일양립지원센터는 9개 산재병원에, 치료·일양립지원부는 20개 산재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 타법사례

(유사 입법례, 의료법 전문병원지정)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 병원의 경쟁력 확보

■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978.64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548.21	6,526.85	-1,978.6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1,605,789.41	-1,605,789.41
정부				
총 합계		4,548.21	1,612,316.26	-1,607,768.05
기업순비용		-1,978.64	연간균등순비용	-250.05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우수한 재활전문 기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관련 전문성과 요건을 갖추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신청을 유도하는 규제

→ 전문 의료기관 우대를 위한 조항으로 피규제자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우대로 질 높은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재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왔음,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재활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제공을 도모
- 따라서 행정상 집행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편성 및 조정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연구(2018.11)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관련 의원입법 및 본회의 의결(2021.4)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진행중(현재)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일 이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계획 마련
- (시행일 이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에 관하여 의료기관 대상 안내 진행

3. 종합결론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운영은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의 회복 및 직업능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재활치료가 유연하게 제공,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 법령상 근거를 둔 의료기관은 전문 재활치료에 대한 우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해 짐
 - 따라서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지정신청을 통한 질 높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으로 사회적 편익이 클것으로 예상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548.21	6,526.85	-1,978.6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1,605,789.41	-1,605,789.41
정부				
총 합계		4,548.21	1,612,316.26	-1,607,768.05
기업순비용		-1,978.64	연간균등순비용	-250.05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활동제목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인적요건
비용항목	노동
비용	4,059,224,42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투입인원*연봉(2*256,500,000)
근거설명	<p>○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인적구성은 기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중 직업환경의나 재활의 2명이 필요</p> <p>- 단,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이 강제 사항이 아닌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하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개소수에 따라 비용규모 결정</p> <p>※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신설 의료기관일 경우에 한하며, 기존 인력 활용시 별도 인건비용은 발생하지 않음</p> <p>① 직업환경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건비* : 각각 235백만원, 278백만원</p> <p>* '20년 공단 소속병원 의사 평균 연봉</p>

(정량)세분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활동제목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설비요건
비용항목	설비
비용	488,995,215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3,800,000+440,000,000+33,000,000)
근거설명	<p>○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설비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을 필요로 하나, 각 치료실을 구성하는 비용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p>

	<p>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함</p> <p>- 의료기관마다 기존에 기설치 완료한 시설도 활용 가능하므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 개소수에 따라 비용 결정</p> <p>※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신설 의료기관일 경우에만 한하며, 기존 시설 활용시 별도 설치비용은 발생하지 않음</p> <p>② 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의 구축 비용 : 511백만원*</p> <p>* '19년 개원한 공단 서울의원 장비 구입 비용(물리치료실 38백만원, 운동치료실 440백만원, 작업치료실 33백만원(신설 비용))</p>
--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활동제목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운영수익
편익항목	작업능력평가 프로그램
편익	6,526,853,06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연간 인원*운영수익)+(작업능력평가 연간 인원*운영수익)((108*4457000)+(500*687000))
근거설명	<p>○ 직장복귀지원에 따른 작업능력 관련 프로그램 운용 시 예상수익으로 각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선호율 및 접근성 등 의료기관의 작업능력평가 프로그램 대상이 될 산재근로자 규모에 따라 편익이 달라질 수 있음</p> <p>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연간 예상수익 : 824백만원*</p> <p>* 공단 소속병원 사범수가우대 적용시 예상 수익: (108명^① × 4,457천원) + (500명^② × 687천원)</p> <p>①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연간 인원, ② 작업능력평가(직무 분석 등) 연간 인원</p>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산재보험 의료기관
---------	-----------

활동제목	직장복귀지원
비용항목	의료기관 지정요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현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 운영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황

별첨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재활인증의료기관(시범사업) 현황** 21.1.1)

근거설명

구분	소속지사	의료기관명	종별
1	서울지역본부	브레인요양병원	요양병원
2		왕십리휴요양병원	요양병원
3	서울강남지사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4	서울동부지사	드림요양병원	요양병원
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종합병원
6	서울서부지사	금강아산병원	병원
7		서울재활병원	병원
8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9	서울남부지사	명지춘해재활병원	병원
10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종합병원
11		근로복지공단서울의원	의원
12	서울북부지사	녹색병원	종합병원
13		포근한요양병원	요양병원
14	서울관악지사	심정병원	병원
15		은천요양병원	요양병원
16	의정부지사	리하트병원	병원
17	남양주지사	카이저병원	병원
18	춘천지사	강원도재활병원	병원
19	태백지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종합병원
20		강원도 삼척의료원	종합병원
21	강릉지사	동해요양병원	요양병원
22		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종합병원
23	원주지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24		영광병원	병원
25	부산지역본부	인창대연요양병원	요양병원
26		인창병원	요양병원
27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병원
28		서강병원	병원
29	부산중부지사	학교법인 동의병원	종합병원
30		위크재활의학과학병원	병원
31		한빛병원	병원
32	부산동부지사	메드월병원	병원
33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병원
34		센텀이루다요양병원	요양병원

구분	소속지사	의료기관명	종별
35	부산북부지사	구포부민병원	병원
36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병원
37		큰술2병원	병원
38		큰술병원	병원
39	창원지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40		희연요양병원	요양병원
41	울산지사	세민에스요양병원	요양병원
42		울산시티e병원	병원
43		이손요양병원	병원
44	양산지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
45		양산제일병원	병원
46		양산서울요양병원	요양병원
47	진주지사	예손요양병원	요양병원
48		프라임병원	병원
49	김해지사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50		래봄병원	병원
51	대구지역본부	굿모닝병원	병원
52		남산병원	병원
53	경산지사	양지요양병원	요양병원
54	대구서부지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상급종합
55		더나은병원	병원
56		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병원
57	대구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병원
58		뉴라이프병원	병원
59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병원
60	포항지사	위더스요양병원	요양병원
61		채움병원	병원
62		좋은선린요양병원	요양병원
63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종합병원
64	구미지사	갑을구미병원	병원
65		김천제일병원	종합병원
66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종합병원
67	영주지사	올바른요양병원	요양병원
68		청하요양병원	요양병원
69	안동지사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70		안동요양병원	요양병원
71	경인지역본부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병원
72		위드미요양병원	요양병원
7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상급종합
74	인천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7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종합병원
7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종합병원
77		새울요양병원	요양병원

구분	소속지사	의료기관명	종별
78		서송요양병원	요양병원
79	수원지사	베데스다요양병원	요양병원
80		해성병원	병원
81	부천시사	휴앤유병원	병원
82		김포에이치(H)병원	병원
83		김포다올요양병원	요양병원
84	안양지사	아벤스병원	병원
85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상급종합
86		남천병원	병원
87		지샘병원	병원
88	안산지사	경희요양병원	요양병원
89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종합병원
90	성남지사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91		분당베스트병원	병원
92		분당서울대병원	상급종합
93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종합병원
94		분당제생병원	종합병원
95	평택지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96	고양지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합병원
97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종합병원
98		명지병원	종합병원
99		파주시티요양병원	요양병원
100		일산복음요양병원	요양병원
101	화성지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종합병원
102	용인지사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종합병원
103		세종여주병원	병원
104		린병원	병원
105	광주지역본부	호남권역재활병원	병원
106		첨단우암병원	병원
107		우암병원	병원
108		광주희망병원	종합병원
109		화순군립요양병원	요양병원
110	광산지사	첨단종합병원	종합병원
111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의원
112	전주지사	대자인병원	종합병원
113		더세움병원	병원
114		예수병원	종합병원
115		온고을재활의학과병원	병원
116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17		한솔요양병원	요양병원
118	익산지사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19		가족사랑요양병원	요양병원

구분	소속지사	의료기관명	종별
120	군산지사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121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요양병원
122	목포지사	목포기독병원	종합병원
123		목포중앙병원	종합병원
124		목포한국병원	종합병원
125		장흥통합의료병원	병원
126	여수지사	사랑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127	순천지사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128	제주지사	제주권역재활병원	병원
129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130	대전지역본부	다빈치병원	병원
131		대전성모병원	종합병원
132		을지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3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134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35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요양병원
136		웰시티요양병원	요양병원
137		유성지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138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13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140	위크런병원		병원
141	브레인요양병원		요양병원
142	성화대전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143	청주지사	씨엔씨울랑병원	병원
144		아이엠병원	병원
145		청주푸른병원	병원
146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147	천안지사	다우리재활병원	병원
148		새로나병원	병원
149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150	보령지사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량)세분류	직장복귀자
활동제목	사회안전망강화
편익항목	원직장복귀
편익	1,605,789,418,69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원직장복귀 증가인원*원직장복귀자 1인당 평균임금*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소요기간 단축일(6701*87025*348)

근거설명	<p>◆ 조기 경제활동 복귀에 따른 경제효과: 202,938백만원(= 6,701명^① ×87,025원^② ×348일^③)</p> <p>① 개정시 원직장복귀 증가인원: 연 6,70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장복귀 증가인원 6,701명 [=17,992명(개정시 직장복귀예상자)-11,291명(현재 원직장복귀자)] - 개정시 원직장복귀계획서 제출대상: 20,492명 - 개정시 원직장복귀예상자: 17,992명[=20,492(직장복귀계획서 제출대상)-6,250명(사업주 원직복귀 미정 대상자) + [3,750명 (직업능력평가 대상자 중 직업복귀 가능 대상자)] - 현재 원직장복귀자: 11,291명[=20,492×55.1%('19년 실원직복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일용직 등 사실상 원직장복귀가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원직복귀율 <p>② 원직장복귀자 1인당 평균임금: 87,025원(2019년 산재요양종결자취업실태조사, 264.7만원/월임금)</p> <p>③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소요기간 단축: 348일[11.45개월 =19.56개월(원직장복귀자)-8.11개월(재취업자)] * (2017년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논문 이민아 외 1(연세대))</p>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2.규제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3.위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9.10 ~ 2021.10.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가 있으며,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복 후 원 사업장에 원활히 복귀하도록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의 권리보장이 필요 ○ 산재법의 직장복귀 지원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통해 정부는 해당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 직장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는 2만여명의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잔존 장애가 최소화 되고 및 회복 후 직장복귀 여부의 확인은 소속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행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산재보험을 통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함, 이에 산재보험법 내에서 산재근로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전문 재활지원이 가능한 전문 재활의료기관(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관리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5,673개소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50개의 전문 재활인증병원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 ※ 전문 재활인증병원의 지정과 기능에 대한 비용은 산재보험법으로 보장, 지속적인 전문 재활 의료기관의 유지와 운영이 필요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은 산재노동자의 신체재활을 통한 직업재활 촉진을 위한 목적과도 일치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의, 장비를 갖추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전문 재활치료, 훈련 및 평가 기능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 산재근로자의 초기요양부터 재활까지의 의료적 연계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유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재활치료가 적기에 산재근로자에게 제공으로 조속한 		

		직장복귀가 가능하며, 사업주 또한 소속 근로자의 직장복귀 준비 이행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7.규제내용	<p>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지정서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p>② 공단은 지정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업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인력·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p>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유 형</th> <th style="width: 50%;">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규제자</td> <td>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관련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평가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td> <td>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 5,673개소 ※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 150개소 </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관련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평가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 5,673개소 ※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 150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관련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평가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 5,673개소 ※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 150개소								
	9.규제목표	○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의 보호 및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 직장 복귀를 준비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가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직장복귀를 도모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p>○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전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양성·관리, 산재환자에게 우수한 재활치료의 적기 제공으로 조속한 직장복귀 가능 기대</p> <p>- 현재,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은 5천여개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150개의 재활인증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p> <p>- 동 대안은 재활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p>		
기타	12. 일 몰 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지정서 2.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단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p>② 공단은 지정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를 할 수</p>

현 행	개 정 안
	<p>있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업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인력·시설 등이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기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직장복귀지원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p>⑤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정체,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정부개입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및 권리 보장 필요

* (원직복귀율) ('17) 41.6% → ('18) 42.5% → ('19) 43.4% → ('20) 44.4 %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전문적 재활치료를 적기 제공, 직업능력의 조속한 회복으로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	대안명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내용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전문재활 및 직업재활이 가능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갖춘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대상, 직업복귀에 필요한 재활치료 제공 ○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은 별도 의료수가를 적용받아 안정적 지원하에서 질 높은 전문재활치료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의료기관 (산재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필요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직장복귀 계획수립,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작업능력 평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직장복귀 	○ 원직복귀지원 제도 도입 및 시범수가 반영

	소견서 제공 필요 - 장애예상자가 요양 초기부터 재활 특별진찰을 통하여 전문재활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편 필요 - 병원-공단 간 연계 및 협조관계 구축	
--	---	--

3. 규제목표

-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산재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직업 능력 회복을 지원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치료 및 평가기능을 수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신체적 회복을 확인
 - 재해근로자의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필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은 전문재활 의료기관 관리를 체계화 하여 보험기관이 우수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산재 환자에게 연속적·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함
 - 의료기관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지정요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필요
- 재해근로자의 신체적 회복 및 직업능력의 조속한 회복으로 성공적인 원직장 복귀 가능하게 하므로 목적과 수단은 비례적으로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노동자가 치료 후 직장복귀에 성공하기 위하여 직장복귀 후 업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치료와 일양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치료·일양립지원센터는 9개 산재병원에, 치료·일양립지원부는 20개 산재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 타법사례

- (유사 입법례, 의료법 전문병원지정)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우수한 재활전문 기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관련 전문성과 요건을 갖추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신청을 유도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 유지에 따라 재활 우대수가를 제공, 전문 의료기관 우대를 위한 조항으로 피규제자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우대로 질 높은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재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왔음,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재활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제공을 도모
- 따라서 행정상 집행 어려움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시범수가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우대를 기진행중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없이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연구(2018.11)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관련 의원입법 및 본회의 의결 (2021.4)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진행중(현재)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일 이전)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계획 마련(직장복귀의료기관 지원 사항 포함)
- (시행일 이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에 관하여 의료기관 대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모니터링

3. 종합결론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운영은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의 회복 및 직업능력 향상에 필요한 전문재활치료가 유연하게 제공,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 법령상 근거를 둔 의료기관은 전문 재활치료에 대한 우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해 짐
 - 따라서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지정신청을 통한 질 높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으로 사회적 편익이 클것으로 예상됨